

(주)아모레퍼시픽그룹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 이라 칭하고(이하 이 회사라 칭함) 영문으로는 AMOREPACIFIC Group 이라 표기한다.

제2조 (사업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
4.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5.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6.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7.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8. 부동산 매매 및 임대
9.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
10. 위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제3조 (본점 및 지점, 출장소, 영업소의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 지역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육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배당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칭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구천만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3%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이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소정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거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이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또는 공정거래법상 이 회사의 자회사에 해당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가발행)

①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 9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의 3 (일반공모증자등)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해외합작투자선,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후회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8 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 9 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내에서는 상법시행령 에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7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

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삭제>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한 후 3 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9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

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450 억원은 보통주식으로, 450 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 이사회가 결의로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9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450 억원은 보통주식으로, 450 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 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

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29 조 (이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한다.
- ② 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한다.

제 30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이사후보자 1 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하는 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 사내이사 : 3 년
2. 사외이사 : 1 년부터 3 년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시 그 임기를 정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 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 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 ③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한다.

제 34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의 3(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 3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⑤ 이사가 이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5 조 <삭 제>

제 36 조 <삭 제>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 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2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경영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7 조, 제 38 조 및 제 3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0 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그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1 조 (상담역 및 고문)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② 상담역 및 고문의 위촉과 보수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1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9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41 조의 3 <삭 제>

제 41 조의 4 <삭 제>

제 41 조의 5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1 조의 6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1 조의 7 <삭 제>

제 7 장 계 산

제 42 조 (사업년도)

이 회사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제 44 조의 2 <삭제>

제 45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지급한다.

제 45 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6 월 30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에 관한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로부터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에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한 이익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46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5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 ③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써 경영상 필요한 사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85 년 11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1987 년 6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1988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1989 년 3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1992 년 3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1993 년 3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199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199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정관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조, 제 27조, 제 28조, 제 30조, 제 31조, 제 34조의 2, 제 35조, 제 36조, 제 39조, 제 4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0조의 2는 본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
10. 이 정관은 199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① 이 정관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0조 ③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사가 발행한 개정상법시행일(1996.10.①)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율+1%추가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 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12. 이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정관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정관은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정관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정관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정관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정관은 200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정관은 200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개정 정관은 제 5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2013년 3월 22일)에서 결의하는 즉시 시행한다.
23. 본 개정 정관은 제 5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2014년 3월 21일)에서 결의하는 즉시 시행한다.
24. 제 5조, 제 6조, 제 7조 2의 개정내용은 주식분할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25.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6.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본 개정 정관은 제 60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2019년 3월 15일)에서 결의하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 8조, 제 11조, 제 12조, 제 15조의 2 및 제 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